

재정신청서

- 고소인(신청인, 항고인) : 임찬용
- 피의자(피고소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 ‘관피모 사건’ 피의자 전상화, 이를
은폐한 사법경찰관 신미영, 신혜선 등 다수

신청취지 및 이유

위 피의자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형제34887호 (이하, ‘이 사건’)와 관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성현은 2022. 12. 29.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고, 신청인(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2023 고불항 제259호)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승영은 2023. 2. 15. 항고기각 처분을 결정하였다.

I. 각 입증자료 제시

고소인은 항고검사 이승영이 이 사건 항고장에 대해 판에 박힌 허위내용의 항고기각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기각 결정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가. 2022. 4. 20.자 고소장(이 사건 고소장 포함, (첨부 1))¹⁾

이 사건은 고소인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위 2022. 4. 20.자 고소장 중 【이 사건 각 범죄사실】 항목에서, “나. 피고소인 전상화의 범행”, “다. 피고소인 신미영, 피고소인 000 등의 공동범행”에 해당된다.

나. 2022. 9. 27.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첨부 2)

다. 2022. 10. 10.자 이 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첨부 3)

라. 2022. 12. 29.자 이 사건 불기소 결정서(첨부 4)

마. 2023. 1. 10.자 이 사건 항고장(첨부 5)

바. 2023. 2. 15.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문(첨부 6)

1) 이 고소장은 ‘관피모 사건’을 은폐·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의 범죄에 대한 고소장이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고소인은 이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대검찰청에서는 이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거주하는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방법검찰청성남지청에 이첩하였다.

그런데 수원지방법검찰청성남지청에서는 이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관피모 사건’을 은폐·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에게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 위해 경찰로 하여금 조작·은폐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할 경찰서인 성남수정경찰서에 몽땅 이송해 버렸다. 이와 같은 불법 이송조치는 해당 검사의 고소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또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수원지방법검찰청성남지청의 불법 이송 취지에 따라 이 고소장에 대해 은폐·조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서울서대문경찰서 및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피고소인별로 2개로 쪼갠 다음 이를 인근 경찰서인 서울서부경찰서 및 서울도봉경찰서로 각각 이송해 버렸다.

그러나 위와 같이 2개로 쪼개진 이 고소장은 검찰수사 마지막 단계인 항고 형사절차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검사 이승영에게 모두 배당되었다.

Ⅱ. 위 각 입증자료에 대한 순차적 고찰 (경찰 및 검찰은 이 사건을 은폐·조작 수사함)

이 사건 수사담당자인 서울도봉경찰서 경위 배보성은 그의 결재권자인 경감 이현철 수사과장(이하, ‘이 사건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들’이라 함)과 공모하여, ‘관피모 사건’ 피의자이자 이 사건 무고 피의자인 전상화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인근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동료 경찰관이자 ‘관피모 사건’을 은폐·조작 수사해 버린 이 사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피의자인 신미영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장에 명백한 증거자료가 수없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마저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검찰에 송치해 버렸고,(첨부 1, 첨부 2, 첨부 3 각 참조)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 정성현은 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수사기록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2022. 12. 29.경 이르러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이 사건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들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해 놓은 2022. 9. 27.자 피의자 전상화 및 피의자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은폐해 버렸다. (첨부 4 참조)

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검사 이승영 역시 이 사건 항고장이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수사기록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

다가, 2023. 2. 15.경 판에 박은 허위내용의 항고기각결정문을 작성한 수법을 통해 또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은폐해 버렸다. (첨부 5, 첨부 6 각 참조)

특히, 이 사건 조작 · 은폐 수사와 관련,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2022. 12. 20.자 LPN로컬파워뉴스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버린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 사건 처분 예정과 관련하여

“◎ ‘관피모 사건’ 고소인인 필자는 2022. 10. 10.경 ‘관피모 사건’ 피의자 전상화 및 사법경찰관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도봉경찰서장에 제출하였고, 동 이의신청서가 첨부된 수사기록은 2022. 10. 20.경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 정성현에게 배당되었다. (2022형제34887)

그러나 검사 정성현은 위 사건에 대해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해당 수사기록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이르러 사법경찰관 배보성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각하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는 애당초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은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게재하였다. (2022. 12. 22.자 위 신문기사 1부.(첨부 7))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소인의 예견대로 검사 정성현은 이 사건 수사기록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2022. 12. 29.경 이르러 서울도봉경찰서 사법경찰관 배보성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각하 처분을 해버렸고, 이 사건 항고검사 이승영 역시 2023. 2. 15.경 판에 박힌 허위내용의 기각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이 사건 항고장을 기각 결정해 버렸다.

결국, 고소인의 예견대로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는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은폐하기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의 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등대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검사 이승영은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소장’ 중 이 사건 항고장 (피의자 전상화 및 피의자 신미영 등 다수, 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259호, 수리일자 : 2023. 1. 13.)은 물론, 피의자 문경석 외 1인에 대한 항고장((첨부 8), 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680호, 수리일자 : 2023. 2. 2.)까지 함께 배당받아 수사 중에 있었다.

위 2개의 항고사건(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259호 및 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680호)은 앞서 ‘주석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한 개의 고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 나아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대상 범죄임에도 ‘관피모 사건’을 은폐·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에게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 위해 성남 검찰과 성남수정경찰서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한 개의 고소장을 2개의 사건으로 쪼개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위 2개의 사건은 ‘관피모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관피모 사건’의 동일성 및 단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범위에서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의도적으로 쪼개져서는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남 검찰청과 성남수정경찰서가 의도적으로 쪼개놓은 위 2개의 사건이 항고 형사절차 단계에서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검사 이승영에게 함께 배당되었다면, 항고검사 이승영은 위 2개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여 동시에 처분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고검사 이승영은 위 2개의 사건에 대해 공히 명백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각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차를 두고 위 2개의 사건 중 이 사건 항고장에 대해서만 판에 박은 허위내용의 기각결정문을 작성해 버렸다.

나머지 사건인 피의자 문경석 외 1인에 대한 항고장(서울고검 2023 고불항 제680호)에 대해서도 적당한 때를 기다려 똑같은 방식으로 기각결정을 내릴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참으로 이승영이 서울고검 항고검사치고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특히, 고소인은 2023. 1. 10.자 이 사건 항고장에서 이 사건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 놓고 있다.(첨부 5 참조)

“㉠ 피고소인 전상화의 무고 피의사실 입증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이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게끔 핵심증거 2개를 특정
까지 해놓았다.

즉, 전상화는 2022. 3.경 고소인을 상대로 서울성북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 신미영 수사관
에게 접수시킨 ‘전상화 고소장’에서 “전상화 자신은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이 카페)
에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임찬용)이 고소인(전상화)를 비방
할 목적으로 ‘사법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삼아 자신들(구수희 및 전상화)의 영업활동
을 하고 있다’는 식의 글을 (이 카페에) 올렸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고소인(전상화)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임찬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성북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고소인 임찬용은 ‘전상화 고소장’의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전상화가 이 카페에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22. 4. 20.자 전상화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이 사건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
였다.

위 전상화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에는 전상화가 이 카페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2021. 10. 5.자 ‘임찬용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 7’ 및 ‘첨부 8’의 각 증거자료까지 특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 담당자인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감 이현철 및 경위 배보성은 위와 같이 특정해 놓은 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수법을 통해 이 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㉔ 이 사건 수사팀 서울도봉경찰서 경감 이현철 및 경위 배보성 등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소인 신미영 및 그의 상사 신혜선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소장에 명백하게 현출되어 있는 범죄사실마저도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이행하였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동문서답, 유체이탈 방식의 꾀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즉, 서울도봉경찰서 사법경찰관들은 피고소인 신미영 및 그의 상사 신혜선 등을 사건조작 및 은폐 범죄 중대 혐의자로 정식 소환하여 “금방 확인 가능한 허위내용의 ‘전상화 고소장’을 각하 처분함과 동시에 전상화를 무고죄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임찬용 고소장’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전상화 고소장’을 임찬용이 거주하는 성남수정 경찰서에 이송해 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동문서답, 유체이탈 방식의 꾀변에 근거한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해 버렸다.²⁾

이들도 이 사건 피고소인이자 사법경찰관등인 신미영 및 신혜선과 마찬가지로 중대 사건 조작 및 은폐 범죄 혐의로 처벌 대상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고소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핵심쟁점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고검사 이승영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2) 더 구체적인 내용은 2022. 10. 10.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의의신청서 (첨부 3) 참조

얇은 채 판에 박은 허위내용의 기각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은폐해 버렸다.

Ⅲ. 결론

이 사건은 ‘관피모 사건’ 은폐·조작 수사에 따른 범죄로서 우리나라 국법이 무너지고, 수도권 검·경이 통째로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피모 사건’ 배후자를 반드시 색출하여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애당초 이 사건에 대한 증거관계가 확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적당한 때를 기다려 경찰서에서는 허위 내용의 (각하) 불송치 결정서, 검찰청에서는 이를 인용한 허위내용의 (각하) 불기소결정서, 고등검찰청에서도 이를 인용한 허위 내용의 항고기각 (각하) 결정문을 작성해 왔다는 사실만을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사법정의를 훼손되고, 사회 곳곳에는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사건브로커 및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이 사건 피의자 전상화 및 피의자 신미영, 그의 결재권자 신혜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전원 서울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2. 4. 20.자 고소장(이 사건 고소장 포함) 1부.
2. 2022. 9. 27.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 1부.
3. 2022. 10. 10.자 이 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1부.
4. 2022. 12. 29.자 이 사건 불기소 결정서 1부.
5. 2023. 1. 10.자 이 사건 항고장 1부.
6. 2023. 2. 15.자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문 1부.
7. 2022. 12. 22.자 LPN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 1부.
8. 2023. 1. 30.자 피의자 문경석 외 1인에 대한 항고장 1부. 끝.

2023. 2. 22.

위 신청인(고소인) 임찬용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